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교육 의무대상 확대 등〉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58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은회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3. 21.
3. 회부연월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등 특정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 성인의 경우 자율적 시행으로 안전교육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제도권 내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국민 안전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또한, 안전교육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군인,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교육의 통합 실시 및 안전교육 전문 인력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의 명칭을 정신재활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0조의2(공공기관 등의 안전교육)</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u>1. 중앙행정기관</u> <u>2. 지방자치단체</u> <u>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u> <u>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u> <u>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u> <u>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u>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u>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u>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3. (생략) <u><신설></u>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0조의3(군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u>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군인</u> 2. 「<u>예비군법</u>」 제3조에 따른 <u>예비군</u> 3. 「<u>민방위기본법</u>」 제19조에 따라 편성된 <u>민방위 대원</u>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 ----- ----- -----. 1. ----- -----<u>정신재활시설</u>----- ----- ----- 2. 3.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2(안전교육의 통합 실시)</u>

현행	개정안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제9조부터 제13조까지</u>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u>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u> 제17조(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 ① ----- -----<u>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④ <u>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은 “안전교육”을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으로 정의¹⁾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²⁾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³⁾, 재난·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⁵⁾, 사회복지시설 등의 거주자 및 이용

-
- 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5)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5.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6.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7.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자⁶⁾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활용, 육성·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⁷⁾하고 있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의 실시 의무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법정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 대상자의 해당 안전교육에 대한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지식을 제고하기 위한 안전교육 강화 방안으로, 단계적인 안전교육 대상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안전교육 의무대상으로 추가하고, 안전교육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중복 교육 이수 방지 및 실효적인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해 안전교육의 통합 실시 근거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
- 6)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7)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가로, 현행법은 안전교육 의무대상인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로 “정신 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정신재활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해당 시설은 2015년 11월 19일에 시행된 「정신보건법」(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라 명칭이 “정신재활시설”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에 대한 안전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동의하며, 안전교육의 통합 실시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교육이 가능한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고, 통합교육 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